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0가단219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홍재, 박예지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천정환

2. 주식회사 C

변론 종결2024. 11. 1.

판결 선고2024.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이 2018. 6.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접수 제97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과 D이 2017. 3.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D에게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접수 제382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7가합100551 판결, 이하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3) 판단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

1)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2) 판단 관련 민사소송 판결의 내용, 대법원 2024도12345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관련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노190)의 이유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부정하는 판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한편 대법원 2024도12345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0노190 판결의 소송자료 및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E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은 단축급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1) 법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지만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2) 판단 가) 갑 1, 2, 3, 8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구지방법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할 당시 D은 채무 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B는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상태에서 피담보채무액과 시가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 B는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실제로 D에게 대여해주었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B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1인을 위한 채권담보 제공행위를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갑 7호증, 을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가) 피고 B가 F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작다.

(나) 피고 B는 1억 원 대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 아니라 위 대여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잔여 담보가치가 없던

상태였다.

라.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부에도 깊게 관여한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 B와 D이 2018.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접수 제97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한편 갑 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D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웅희

별지